

의안번호	제943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3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이동우,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상정,
유재목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며, 의회의 사전·사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이에,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공공기관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충청북도의회의 동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정부공모사업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사무
4.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공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 및 관리의 용이성
5.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및 내용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연장 또는 갱신의 경우는 추진 실적을 포함한다)

3.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4. 위탁·대행기간(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7.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동일한 수탁·대행기관에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대행기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사무처리지침)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기준,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제2항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각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위탁·대행사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대행 중인 사무로서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 사 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